



대구 중심, 달서의 시대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4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아동가족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아동가족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

- 달서가족문화센터 수강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
-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규정 조례안 제10조제2항제9호 중 “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 정의” 를 “둔” 으로 하고,
- 조례안 별지 (달서가족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)중 “공연장 2시간 이내 20,000원, 4시간 이내 40,000원, 1일(8시간) 80,000원” 에서 “공연장 1회(4시간 기준) 100,000원,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” 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. 3. 4일부터 3. 2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. 4. 1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달서가족문 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 번호 | 00924048 |
|----------|----------|

제출년월일: 2024. 4. 5.

제출자: 달서구청장

(아동가족과장)

1. 제안이유

- 수강료 및 시설이용료의 감면대상 범위를 두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
- 가족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수강료 할인 규정 개정(안 제10조제2항제9호)
-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공연장 사용료 개정(안 별표)

3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3. 4.~3. 25.)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4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9호 중 “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”를 “둔”으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달서가족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(제9조 관련)

1. 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기 준 | 사용료 | 비 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|
| 공연장 | 1회(4시간 기준) | 100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야간(18시 이후)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. |
| 회의실 및 강의실 | 1회(2시간) | 10,000 | |
| 부속설비 | 피 아 노 | 30,000 | ○ 각 1회당 금액임. |
| | 빔 프로젝트 | 20,000 | |
| | 조 명 | 20,000 | |
| | 음 향 | 20,000 | |
| | 냉·난방기 | 80,000 | |

2. 문화강좌 수강료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이용료 | 비 고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문화강좌 이용료 | 60,000원 이하 | · 주 1회 1월 기준 |
| 그 밖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프로그램별 기준액은 따로 정함. · 운영시간에 증감이 있을 경우 수강료는 기준액에 비례하여 증감할 수 있음. · 교재 및 재료비 별도 | |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|----|----|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|
| <p>제10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9. <u>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 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</u></p> <p>10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【별표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서가족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(제9조 관련)</p> <p>1. 시설 사용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연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시간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,000</td> <td rowspan="3"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">○ 야간(18시 이후)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시간 이내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,000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일(8시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0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공연장 | 2시간 이내 | 20,000 | ○ 야간(18시 이후)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| 4시간 이내 | 40,000 | 1일(8시간) | 80,000 | <p>제10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----- <u>둔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【별표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달서가족문화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(제9조 관련)</p> <p>1. 시설 사용료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 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사용료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공연장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회 (4시간기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○ 야간(18시 이후)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공연장 | 1회 (4시간기준) | 100,000 | ○ 야간(18시 이후)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. |
| 구분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연장 | 2시간 이내 | 20,000 | ○ 야간(18시 이후)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4시간 이내 | 40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1일(8시간) | 80,0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공연장 | 1회 (4시간기준) | 100,000 | ○ 야간(18시 이후),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.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【관계법령】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

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·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(原狀)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

제22조(사용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(料率)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
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삭제

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2.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
3.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금액·방법, 이용기한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